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8. 6(월) / 총 3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최대경, 주무관 정치영</li> <li>• ☎ (044) 201-3755, 4082, 4752</li> </ul>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「건축법 시행령」 입법예고 관련

- 우리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(18.7.31~9.9)입니다.
-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반면,
  -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,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.

### <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>

- \* 설계단계: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
- \*\* 감리단계: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·필로티 기둥·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

### < 보도내용 (8.6, 매일경제) >

<p>◆ 「필로티 시공과정 녹화한다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‘직격탄’을 맞았던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’이 입법예고</li> <li>-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·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...</li> </ul>
---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대경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건축법 시행령 개정

## ①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

- (현 행)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구조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부실설계 등이 우려됨
- (개정안)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(설계도서 서명날인) 의무대상으로 확대\*하고, 감리 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\*\*을 협력대상으로 포함

## &lt;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&gt;

\* 설계단계: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 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

\*\* 감리단계: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·필로티 기둥·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

## ②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

- (현 행) 다중이용 건축물\*의 기초·매 5층·지붕 슬래브 배근 시에만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축물 관리는 미흡

\*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문화·종교·판매시설 등, 16층 이상인 건축물

- (개정안)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\*하고, 촬영 시기를 확대\*\*

\* 다중이용건축물, 특수구조건축물,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

\*\* (현행)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·매 5층·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

(개선)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, 필로티의 기초·전이기둥·전이보 철근배치 시 추가

### ③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

- (현 행) 주택 등은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바,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함
  - \* 건축법 시행령 개정('17.12월)으로 모든 주택이 구조안전(내진설계) 확인 대상에 포함됨
- (개정안) 구조안전이 확인되어 인정된 표준설계도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

## 2.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

### ① 구조관련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

- (현 행) 인·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관련 설계도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와 허가권자의 혼란이 발생
- (개정안)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으로 총괄표, 구조계획서, 배근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, 배근상세, 접합상세 등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구조 상세도면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함
  - 또한,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허가와 같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할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

## 3.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

### 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에 규정

- (현 행) 지진발생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이 아닌 '고시'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잘 이행되지 않는 실정
- (개정안) 비구조요소(외벽마감 등)의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명확히 규정